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8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윤준병ㆍ허성무ㆍ송옥주

박홍배 • 문대림 • 박희승

허종식 • 허 영 • 장철민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 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려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
영 활성화) ① ~ ③ (생 략)	영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u>
	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
	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
	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고려요소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